

	<h1>보 도 자 료</h1>	작성과	지방세운영과
	<p>2019년 7월 15일(월) 조간 (7. 14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담당자	과 장 이화진 사무관 박성근
		연락처	044-205-3831 044-205-3839

사업주 여러분,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

- 시·군·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(WeTax)로 신고·납부 가능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·광역시, 시·군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.
-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.
 -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, 1m²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.
 - 다만,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「대기환경보전법」과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라 개선명령,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²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.
-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·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(무신고가산세 10% 등)가 추가로 부과되므로,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.
- 한편,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·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·군·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.
 - 위택스 누리집(www.wetax.go.kr)을 이용하면,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.
-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·군·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(www.wetax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